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·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3등급 또는 4등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외교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4. ~ 3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중 총계 “1,510”을 “1,511”로 하고, 외무공무원 계 “1,510”을 “1,511”로 하며, 8등급 이하 “1,109”를 “1,11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5]

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(제58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510</u>	<u>1,511</u>	+1
외무공무원 계	<u>1,510</u>	<u>1,511</u>	+1
·	·	·	
·	·	·	
8등급 이하	<u>1,109</u>	<u>1,110</u>	+1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3